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 결격사유 명확화〉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632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 결격사유 명확화	2

I. 개요

1.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63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12. 18.
- (3) 회 부 일 : 2024. 12.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이 법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는 2017년 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이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어떠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배분 업무를 관장하는 바, 현재 규정된 결격사유 외에도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는 보다 엄격하게 임원 자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원 결격사유를 「사회복지사업법」과 유사한 기준으로 하고,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호 및 제3호).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 결격사유 명확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350조의 상습범),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호 및 제3호).

현행	개정안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금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생략) <u><신설></u>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 ----- -----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현행과 같음) 3. 「형법」 제347조, 제350조,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

	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조 또는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나. 검토의견

- 현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1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이 법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는 2017년 10월 24일에 삭제되었고, 유사한 결격사유를 제19조로 옮겨 규정하면서 부칙을 통해, 다른 법령에서 제7조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제40조제4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함.¹⁾

< 결격사유 비교2)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 사회복지사업법 」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이하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 지방재정법 」 제97조, 「 영유아보육법 」 제54조

1)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4923호, 2017.10.24.)

부칙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3조의4, 제33조의5, 제33조의6, 제33조의8, 제41조의3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률은 수범자로 하여금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다른 법률의 삭제된 조항을 인용하면서 부칙을 통해 다시 또 다른 법률의 결격사유를 인용토록 하는 것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을 직접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2) 동일한 내용의 호 번호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호 번호를 따름.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의 제5호, 제6호는 각각 현행 제1호의5, 제1호의6을 의미함.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공동모금 재원을 관리·운영하는 모금회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재산범죄에 대해 결격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려는 취지도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는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자(제2호), 설립허가 취소 법인의 임원(제2의2호), 시설장에서 해임된 자(제2의3호), 폐쇄명령을 받은 자(제2의4호) 및 관련분야 퇴직공무원(제3호)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이 중 제3호는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결탁을 막으려는 것으로 일반 사회복지법인에는 유의미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로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다른 결격사유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제2항³⁾에 따르면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따르고, 제2항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시 동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⁴⁾, 두 가지 법률에서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달리 규정하는 것은 법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둘째, 개정안 제11조제3호의 내용 중 일부 중복된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모금회는 공동모금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운용 및 관리하고 이를 배분하는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안 제11조제3호 중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안 제11조제1호에 따라 인용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서 사실상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서는 ‘「형법」 제40장 (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⁵⁾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형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배임수중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40장에는 제355조(횡령, 배임)와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가 포함됨.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하 '모금회법'이라 함)」 제11조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결격사유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제2호 내지 제2의4호를 추가하는 것이 「모금회법」 제4조제2항에서 '모금회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좀 더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재산범죄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나 개정안 제11조제1호에서 보다 엄격하게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 제11조제3호에서 제355조, 제356조는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정안 제11조제1호와 제3호에 횡령, 배임죄가 중복되어 개정안 제11조제3호에서 「형법」 제355조, 제356조 삭제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7

제),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제359조(미수범),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